

##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임용규정

2012. 03. 01. 신규제정  
 2012. 08. 01. 부분개정  
 2016. 11. 01. 부분개정  
 2020. 03. 01. 부분개정  
 2022. 07. 01. 부분개정  
 2025. 08. 01. 부분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대전보건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교원인사규정 제2조에 의한 비정년트랙전임교원(이하 “교원”이라 한다)의 자격, 계약 및 처우에 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원의 종류)** ①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은 강의를 전담하는 강의(실습)전담교원과 연구를 전담하는 연구전담교원, 산학협력을 전담하는 산학협력중점교원으로 구분하며 강의 전담교원 중 외국어 분야의 교육을 목적으로 임용된 외국 국적의 원어민 교원을 둘 수 있다.

②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은 대외적으로 ‘비정년트랙’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임용원칙)** ①교원은 본 대학 교원인사규정 제11조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②비정년트랙교원의 임용절차는 전임교원 신규임용 절차에 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공개강의는 실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임용계약)** ①신규임용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임용기간은 2년 이내의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재임용은 제7조에 의한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년 이내의 계약으로 재임용될 수 있다. 다만, 임용기간이 만료되어도 재계약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직이 해임된 것으로 본다.

③연구전담교원은 대학 내의 연구소 등에서 외부기관, 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지원되는 연구비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임용할 수 있으며 연구비가 없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임용계약이 만료된다.

**제5조(교원의 의무)** ①교원의 책임강의 시간은 대전보건대학교 학칙 제40조를 준용한다. 단, 특별한 경우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계약에 의하여 책임시수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2.07.01.>

②교원은 총장의 사전승인 없이 근무기간 중 타 기관에 출강 또는 겸직할 수 없다.

③교원은 강의·실습·연구·산학협력 이외에 학생지도나 학과행정은 담당하지 아니하며 학과의 교수회의는 학과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참석할 수 있다. 단, 보직자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6조(보수)** ①교원의 보수는 임용직급·연구 및 교육경력·계약조건 및 기타 사항 등을 고려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임용계약서에 의한다.

②보수의 지급방법은 제1항에서 정한 연봉을 12회로 균등분할하여 매월 본 대학교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제세금, 사학연금 부담금, 건강보험료 등은 월 급여에서 원천공제 징수한다.

③퇴직금은 사립학교연금법에 의하며 별도로 퇴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초과강의료는 정년트랙 교원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제7조(재임용 절차 및 심사)** ①교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이사장은 임용기간 만료일 4개월 전까지 임용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재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당해교원에게 서면 통지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 받은 교원이 재임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임용 심의를 이사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재임용 심의를 신청 받은 이사장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교원의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임용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당해 교원에게 통지한다. 이 경우 당해 교원을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재임용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와 재임용 거부사유를 명시한다.

④교원인사위원회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임용 심의를 함에 있어서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재임용 심사 평정표에 근거한다. 이 경우 심의과정에서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교원에게 지정된 기일에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에 의한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개정 2020.03.01.>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임용이 거부된 교원이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⑥교원이 임용기간이 만료되어 재임용되지 아니하면 당연 퇴직된다.

⑦제1항 및 제2항의 업무는 이를 이사장이 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총장은 그 결과를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⑧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전보건대학교 교원재임용 평정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20.03.01.>

**제7조의2(외국인 교원 재임용)** 외국인 교원의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근거하여 재임용을 시행한다.<신설 2020.03.01.>

**제8조(정년트랙 전환)** ①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이 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전환을 희망하는 경우 임용기간 동안의 내용을 바탕으로 교원재임용평정규정에 따라 평가한 결과 60%이상을 획득하는 경우에 한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회 승인을 얻어 전환할 수 있다. 단, 전환에 대한 희망은 재임용 신청 시기에 맞춰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별지 제2-1호 서식]의 정년트랙 전환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확인한다.<개정 2016.11.01., 2025.08.01.>

②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이 계약기간 중 본 대학 정년트랙 전임교원 채용에 지원할 경우에는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보칙)**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 대학의 교원인사 관련 규정을 준용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재직 중인 연봉제교원(외국인교원)은 각각 그 임용잔여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20.03.01.>

##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임용계약서

학교법인 청운학원 이사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_\_\_\_\_(이하 "을"이라 한다)는 대전보건대학교 교원 인사관리규정 및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임용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임용계약을 체결한다.

### 다 음

1. "갑"은 "을"을 대전보건대학교 \_\_\_\_\_과에 비정년트랙 \_\_\_\_\_로 임용한다.
2. "을"의 임용계약기간은 \_\_\_\_\_년 \_\_\_\_\_월 \_\_\_\_\_일부터 \_\_\_\_\_년 \_\_\_\_\_월 \_\_\_\_\_일까지(\_\_\_\_년)로 한다.
3. "을"의 보수는 아래와 같이 연봉으로 책정하여 지급한다.
  - 가. 연봉액은 일급 \_\_\_\_\_원으로 정하며, 이 연봉액은 매년 갱신할 수 있다.
  - 나. 보수 지급은 상기 "가"의 연봉을 12개월로 균등분할 한 \_\_\_\_\_원을 매월 지급하되, 체세금 및 사학연금부담금, 건강보험료 등의 공과금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 다. "을"의 퇴직금은 사립학교연금법에 의하며, 별도의 퇴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4. "을"의 주당책임 강의시간은 \_\_\_\_\_시간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계약에 의하여 책임시수를 조정할 수 있다.
5. 주당책임 강의시간이 \_\_\_\_\_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강의료를 지급한다.
6. "을"은 대전보건대학교 교원으로서 대학의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본책무(강의·실습·연구·산학협력)는 물론 "갑"으로부터 부여받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갑"의 교육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교육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7. "을"은 타교 또는 타 기관에 출강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없이 출강했을 때 해당 월의 보수를 외부출강 일수로 일할 계산한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 한다. 개인 사정 및 공휴일 등으로 인한 수업 결손은 반드시 보강을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초과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8. "을"은 일주일에 4일 이상 출근해야 한다.
9. "을"은 지정된 기간에 수강학생을 대상으로 해당 교과목의 강의계획서를 제출하고 종강 후 수강 학생으로부터 강의 평가를 받는다.
10. "을"이 질병, 부상 등으로 치료 중일 때에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여 병가를 허용한다.
11. "을"의 재임용 절차 및 심사는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임용 규정 제7조에 의한다.
12. "을"은 기타 수업에 대한 모든 사항은 학과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3. "을"의 계약기간의 만료는 학기개시일전으로 한다.

- 14. “갑”은 “을”이 아래 항목에 해당할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가.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
  - 나. 신체 이유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 다. 복무사항의 의무와 계약사항을 위반할 때
  - 라. 교수 자격인정에 필요한 학력 등 관련서류를 허위로 제출하여 고용된 경우
  - 마. 교수로서의 품위를 손상 하였을 경우
  - 바. 임용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재임용되지 아니할 경우
  - 사. 본인의 사정에 의하여 퇴직하고자 할 때에는 고용자의 동의를 얻어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고용자는 고용자에게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 15. 본 계약은 “갑”과 “을” 양방의 합의에 따라 체결하며, 2부 작성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하며, 계약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발생하는 경우 상호 협의에 의한다.
- 16.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전보건대학교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임용 규정 및 교원인사 관련규정에 의한다.

년 월 일

임 용 자 갑 : 학교법인 청운학원 이사장 (인)

피임용자 을 : (인)

[별지 제2호 서식]<개정 2020.03.01.>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재임용 심사 평정표**

피평가자 인적사항	소 속		
	사 번		
	계약기간		
	성 명		
피평가자 강의평가	평가대상기간		
	20__-__ 학기	과목명 :	
		시 수 :	평 가 :
		과목명 :	
		시 수 :	평 가 :
		과목명 :	
		시 수 :	평 가 :
	20__-__ 학기	과목명 :	
		시 수 :	평 가 :
		과목명 :	
		시 수 :	평 가 :
		과목명 :	
시 수 :		평 가 :	
20__-__ 학기	과목명 :		
	시 수 :	평 가 :	
	과목명 :		
	시 수 :	평 가 :	
	과목명 :		
	시 수 :	평 가 :	

평가단계 <sup>1)</sup>	평가항목	평가내용				평가결과
1단계	강의평가 <sup>2)</sup>	담당 교과목 객관식 강의평가 점수가 평균 70점 이상인 자 <sup>3)</sup>				P / F
	수업일수준수	학기당 담당 수업일수 준수				P / F
2단계	평가항목	평가내용 (100점 만점, 항목별 점수 차감)	감점	해당 여부	감점합계 (A점)	
	강의계획서 입력	수강신청일 이전 담당 교과목 강의계획서 입력 완료여부 (최초 위촉 학기는 평가 제외)	모두 완료한 경우	0		
			담당 강의 중 미완료한 강의가 있는 경우	-20		
	성적입력	성적 입력 기간내 전산 입력 완료 여부	모두 완료한 경우	0		
			담당 강의 중 미완료한 강의가 있는 경우	-20		
	자료제출 (계약완료 직전학기 제외)	담당 교과목 수행 관련 자료 제출여부 (출석부 성적평가내역서)	모두 완료한 경우	0		
			담당 강의 중 미제출한 강의가 있는 경우	-20		
	교육자로서의 자질	교육자로서의 의무 수행, 품위유지, 윤리성	정직 1회	-35		
			감봉 1회	-30		
			견책 1회	-25		
경고 1회			-10			
주의 1회			-5			
<b>총계 (100점 만점, 감점합계점수 차감)</b>			<b>100점 - A점 = (      점)</b>			
평가사유	※ 위 항목에 따른 평가결과 책임용에 탈락한 경우 해당사항의 구체적 설명 기재					
평가자      소속: _____      성명: _____ (인) 소속: _____      성명: _____ (인) 소속: _____      성명: _____ (인)						
<b>대전보건대학교 총장 귀하</b>						

1) 1단계 항목 모두 "P"인 경우 2단계 평가를 진행하여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책임용  
 2) 강의평가대상 제외 강좌거나, 강의평가 응답률이 50% 미만인 강의는 'P'로 평가함  
 3) 담당 교과목 중 강의평가 평균이 70점 미만인 경우는 책임용에서 제외함



[별지 제3호 서식][Attachment 3]비정년트랙 외국인 전임교원 재임용<신설 2020.03.01.>

## Regulation on Non-Tenure Track (NTT) Foreign Professor Re-appointment

### Article 1. (Purpose of Regulation)

This regulation ensures the matters regarding the appointment and treatment, etc., for non-tenure track foreign professors (hereinafter, shall be referred to as "professor") who have been invited based on the needs for special education at Daejeon Health Institute of Technology (hereinafter, shall be referred to as "college")

### Article 2 (Re-appointment period)

The re-appointment evaluation is carried out on the basis of the college's evaluation of his/her achievements, during a period of four months before the professor's contract expires.

### Article 3 (Procedure for Re-appointment)

1. Professors can be re-appointed by the Chairman of the Board; based on the recommendation of the President, following a deliberation by the Faculty Personnel Committee, in pursuant to the Regulation on Article 39.
2. The appointment authority holder shall notify the professor(s) when their term of employment will be expired; and when, and at what time, they are eligible to apply for deliberation on their re-appointment. This notice shall come into effect four months prior to the expiration of their term of work.
3. If the professor(s) who have received notice of termination of contract wants to be reviewed for reemployment, he/she, shall submit a reappointment review to the appropriate department within 15 days of the notice.
4. The review of reappointment under the provisions of Article 3 shall be decided on reappointment after deliberation by the Teachers' Association. A notification shall be given to the professors two months prior to the expiration of the term of appointment. If committee has decided with consideration not to rehire professor, they shall be notified with specifying the reasons.

### Article 4. (Qualification for Re-appointment)

1. Any professors who apply for re-appointment must have a working visa and be eligible to stay while holding one of the following visa statuses; E-1, F-2, F-4, F-5 and F-6.
2. When rehiring, the professors must be able to speak Korean at their daily level, show or demonstrate Korean language skills or be eligible for TOPIK level 3, or

higher.

#### **Article 5 (Refusing the re-appointment)**

All professors who work for the college must submit a yearly teacher's work evaluation to the college.

1. At least 60 evaluation points shall be obtained, to be considered for the re-employment evaluation.
2. Those who do not correspond to Article 4 shall not be re-employed.

#### **Article 6 (Evaluating re-appointment)**

A review of the reappointment of professor(s) by the Teacher's Personnel Committee shall be based on objective reasons, such as, the assessment contained in Attachment 9. In such a case, a period of not less than 15 days, shall be set for the deliberation process to give the professor(s) an opportunity to appear before the Teachers' Personnel Committee at their appointed time, or to submit their opinion by letter.

#### **Article 7 (Appeal Commission)**

If the professor who has been denied reappointment wishes to protest against the measure to reject reappointment, he/she may request a review of the teachers' petition. The review committee pursuant in Article 7 of the Special Act on the Improvement of the Status of Teachers, and the Protection of Educational Activities within 30 days of the notice of disposal.

### **ADDENDA**

1.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March 1st, 2020.

[별지 제4호 서식][Attachment 4]외국인 교원 임용계약서<신설 2020.03.01.>

## 외국인 전임교원 임용계약서

학교법인 청운학원 이사장은 대전보건대학교 교원 인사관리규정 및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임용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임용계약을 체결함.

1. 임용직명 : 조교수
2. 근무기관 : 대전보건대학교(\_\_\_\_\_)
3. 임용계약기간 : \_\_\_\_\_ ~ \_\_\_\_\_
4. 담당과목 및 강의시간
  - 가. 담당과목  
계약기간의 매 학년도 교육과정 및 강의시간표에 의거 학과장이 배정한다.
  - 나. 강의시간  
책임시간은 \_\_시간으로 하되 \_\_\_\_\_ 학년도 교육과정에 의거 \_\_\_\_~\_\_시간 범위 내에서 배정한다.
5. 보수
  - 가. 지급액은 년 \_\_\_\_\_원으로 하며, 연봉액은 매년 갱신할 수 있다.
  - 나. 초과강사료 : 책임시간(\_\_시간) 이상의 초과강의에 대하여는 시간당 \_\_\_\_\_원을 지급한다.
  - 다. 귀하는 학교에서 지급하는 보수에서 사립학교 연금법에 의한 퇴직기여금과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한 의료보험료, 대한민국 세법에 의한 세금 등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라. 퇴직금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의하며, 별도의 퇴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6. 복무
  - 가. 외부출강은 불허한다. 다만, 총장의 승인 하에 가능하며, 승인 없이 출강했을 때 해당 월의 보수를 외부출강 일수로 일할 계산한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 한다. 개인사정 및 공휴일 등으로 인한 수업 결손은 반드시 보강을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초과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 나. 학기 중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할 수 없으며, 해당 학기 말까지 수업을 해야 한다.
  - 다. 계약 기간 중 10일 이상타 지역으로 출타하고자 할 때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라. 일주일에 4일 이상 출근해야 한다.
  - 마. 지정된 기간에 수강학생을 대상으로 해당 교과목의 강의계획서를 제출하고 종강 후 수강 학생으로부터 강의 평가를 받는다.
  - 바. 재임용 절차 및 심사는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임용 규정 제7조에 의한다.
  - 사. 교직원이 질병, 부상 등으로 치료 중일 때에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여 병가를 허용한다.
  - 아. 기타 수업에 대한 모든 사항은 학과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7. 계약의 해지
  - 가.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
  - 나. 신체 이유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 다. 복무사항의 의무와 계약사항을 위반할 때

- 라. 교수 자격인정에 필요한 학력 등 관련서류를 허위로 제출하여 고용된 경우
- 마. 교수로서의 품위를 손상 하였을 경우
- 바. 임용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재임용되지 아니할 경우
- 사. 본인의 사정에 의하여 퇴직하고자 할 때에는 고용자의 동의를 얻어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고용자는 고용자에게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8. 기타

- 가. 본 계약은 학교법인청운학원이사장과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양방의 합의에 따라 체결하며, 2부 작성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 나. 위 계약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발생 시는 상호 협의에 의함.
- 다.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전보건대학교 교원 인사관리규정 및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임용규정에 의한다.

\_\_\_\_\_ . 03. \_\_\_\_\_ .

고 용 인 : 학교법인청운학원 이사장 \_\_\_\_\_ (인)

피고용인 : \_\_\_\_\_  
 대전보건대학교 조교수(비정년트랙)  
OOOOOOO

## [별지 제5호 서식][Attachment 5]외국인 전임교원 임용계약서(영문)

&lt;신설 2020.03.01.&gt;

**Contract for Employment**

Under the Regulations for the Management of Teachers' Personnel and the Employment of Non-Consecutive Track Professors, the Chairman of the Board of Trustees shall conclude the contract for the appointment of full-time non-annual track faculty, \_\_\_\_\_ as follows.

1. **Official Title** : Assistant professor
2. **Place of Duty** : Department of \_\_\_\_\_, Deajeon Health Institute of Technology
3. **Period of Employment** : \_\_\_\_\_ ~ \_\_\_\_\_
4. **Teaching Subjects and Hours**
  - a. Teaching Subjects (Assigned by the head of a department depending upon the curriculum of each year)
  - b. Responsible Teaching Hours (Minimum 9 hours per week upon the curriculum of each year)
5. **Salary** : The annual salary will be paid in Korean currency
  - a. The annual salary is \_\_\_\_\_ Won which includes tax.
  - b. Overtime payment: \_\_\_\_\_ Won per hour.
  - c. The employee will have to pay taxes or charges, including retirement deposit and health insurance, to Government of Republic of Korea according to the Tax Law.
  - d. Retirement benefits are subject to the Teachers Pension Scheme(TPS), and no extra severance pay is provided.
6. **Requirements** :
  - a. The employee should not teach outside of DHIT. However, it is possible under the approval of the president and the monthly compensation shall be reduced and paid by reducing the calculated amount for the number of days of external leave when leaving the school without approval. Class absences due to personal circumstances and holidays must be reinforced, and excessive allowances shall not be paid if they are violated.
  - b. In case of leave of absence, he/she have to fulfill til the end of a semester.
  - c. If the employee have to make leave for more than 10 days during the contract period, he/she must obtain approval from the president.
  - d. The employee should attend his/her office at least four days a week.
  - e. Submit the syllabus plan for the subject within a certain period of time. The class is evaluated by the students at the end of each semester.
  - f. Re-employment procedures and screening shall be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on Non-Tenure Track(NTT) Foreign Professor Re-appointment'.

- g. The medical leave is allowed by following the service regulations of the government employees, such as illness or injury.
- h. The employee should follow the guidances of the Head of Department in respect to all the class works.

**7. Cancellation of the contract:**

This employment contract will be canceled in the following cases:

- a. Negligent in teaching duties.
- b. Difficulty to perform duties due to his/her physical reasons.
- c. Breaks the regulations of this contract or the National Public Labor Laws.
- d. Falsely submitting relevant documents, such as academic credentials required for professor qualification
- e. In case of damaging the dignity of a professor
- f. Term of the appointment expires and the contract is not re-elected
- g. If the employee intends to retire under his/her circumstances, he/she may terminate this contract with the consent of the employee. In this case, the employee shall submit a resignation.

**8. Other conditions**

- a. This contract will be concluded by mutual consent between the Chairman of the Board of Trustees, Chungwoon Educational Foundation and the Non-Tenure Track (NTT) Foreign Professor and each party will keep one of the two written contracts.
- b. If there are any problems in this contract, it should be fully discussed between the two parties.
- c. For information not specified in this Contract, it shall be governed by DHIT Regulations for Teachers' Personnel Management and Regulations for Non-Tenure Track(NTT) Professor.

March/ /

Employer : \_\_\_\_\_

OOO  
Chairman of the Board of Trustees,  
Chungwoon Educational Foundation

Employee : \_\_\_\_\_

OOO  
Non-Tenure track Assistant professor  
Daejeon Health Institute of Technology

[별지 제6호 서식][Attachment 6]외국인 교원 계약만료 통지서<신설 2020.03.01.>

### Prior Notice of the Expiration Date of Appointment

Name : \_\_\_\_\_

Position : Assistance professor

ID Number : \_\_\_\_\_

Period of Appointment : \_\_\_\_\_ ~ \_\_\_\_\_

We notify that your appointment at our college will be expired on  
\_\_\_\_\_

\_\_\_\_\_

**O O O, M.D.**

**President,**

**Daejeon Health Institute of Technology**

**O O O, M.D.**

**Chairman of the Board of Trustees,**

**Chungwoon Educational Foundation**

[별지 제7호 서식][Attachment 7]외국인 교원 계약만료 통지서 수령확인서  
<신설 2020.03.01.>

## **Receipt for Prior Notice of the Expiration Date of Appointment**

(For submission to college)

Dispatcher : [Post] Office of Human-Resource(#0000)

Receiver : [Position] Assistance professor

[Name] \_\_\_\_\_

Documents Received: **Prior Notice of the Expiration Date of Appointment**

**I hereby certify that I have received the Prior Notice of the Expiration Date of Appointment.**

\_\_\_\_\_

**Signature** \_\_\_\_\_

[별지 제8호 서식][Attachment 8]외국인교원 재임용 심의 신청서<신설 2020.03.01.>

## Application for Re-appointment Deliberation

Department			
Name		Position	Assistance Professor (Non tenure track)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Expiration Date of Current Contract			

As the term of appointment expires, I am requesting permission to be re-appointment.

\_\_\_\_\_

Applicant :

(Signature)

학교법인청운학원이사장 귀하  
대전보건대학교총장 귀하

[별지 제9호 서식][Attachment 9]외국인교원 재임용 심사 평정표<신설 2020.03.01.>

**Evaluation table of NTT Foreign Professor Re-appointment**

<b>Employee information</b>	Department		
	I D		
	Term of contract		
	Name		
<b>Employee Evaluation of lectures</b>	Evaluation period		
	Evaluation of lectures	20__-__ Semester	lecture :
			Hours : Evaluation :
			lecture :
		Hours : Evaluation :	
		lecture :	
		Hours : Evaluation :	
	20__-__ Semester	lecture :	
		Hours : Evaluation :	
		lecture :	
		Hours : Evaluation :	
		lecture :	
Hours : Evaluation :			
20__-__ Semester	lecture :		
	Hours : Evaluation :		
	lecture :		
	Hours : Evaluation :		
	lecture :		
	Hours : Evaluation :		



[별지 제10호 서식][Attachment 10]외국인교원 재임용 결과 통지서  
 <신설 2020.03.01.>

## Notice of Consequences for Re-appointment

<b>Department</b>			
<b>Name</b>		<b>Position</b>	Assistance Professor (Non tenure track)
<b>Birthday</b>			
<b>Expiration Date of Current Contract</b>			

The results of \_\_\_\_\_'s application for Re-appointment are as follows:

Result of Re-appointment	Acceptance	O	Rejection	
Period of Re-appointment	~			
Additional guidance				

\_\_\_\_\_

**Chairman of the Board of Trustees,  
 Chungwoon Educational Foundation**